

제주대학교와 대구대학교 간 학점교류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제주대학교와 대구대학교 간에 체결한 학술교류 협정서에 의거 양교 간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서는 양교 간 교류·수학하는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과목이수) ①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은 양교에서 개설된 교과목 중 소속대학(원)의 규정 및 방침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양교는 학점교류 대상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수강신청 공고기간(계절 학기는 수강신청 공고기간, 대학원은 개강 전)에 해당학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대학의 총(원)장은 학점교류 수학희망자를 개강 2주전에 추천하여야 하며, 수강대학(원)의 총(원)장은 추천된 교류학생에 대한 수학허가를 개강 1주전(대학원은 개강 전)에 소속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수교과목 인정, 취득학점 등에 대하여는 소속대학(원)의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⑤ 의·약학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한다(대학원은 제외).

제4조(등록금) 교류대학에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소속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교류대학은 학생에게 등록금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단, 계절 학기의 수강료는 수강학교에 납부한다.

제5조(성적처리) 교류학생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소속대학(원)의 수업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제6조(기타) ① 학점교류제도에 의거 교류·수학하는 학생은 수강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류학생은 수강대학(원)의 학생과 동등하게 편의시설(도서관, 실험실 습실, 기타학생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대학(원)에서 책임을 진다.

③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양교의 수업담당 부서 총괄 책임자간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④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교의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시행일) 본 협약서는 대표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8년 11월 26일



국립제주대학교
CHEJU NATIONAL UNIVERSITY
대학원장 송성대

宋成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 학로 66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대학원장 전재일

전재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국립제주대학교
CHEJU NATIONAL UNIVERSITY
교무처장 최치규

최치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 학로 66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교무처장 서계홍

서계홍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